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09

발의연월일: 2022. 2. 8.

발 의 자:조해진·강대식·강민국

김기현・金炳旭・김성원

김태호・박 진・이철규

정점식 · 최형두 의위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의원의 총정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였으나, 인구변화에만 따른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감소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늘어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안 제22조).

또한, 현행의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 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147조, 제155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투표시간 보장) ①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2배수로 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47조제11항 중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을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

나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등"으로 한다.

제15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열고 오후 9시에 닫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행 <u><신 설></u>	개 성 안 제6조의3(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 유의 투표시간 보장) ①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자 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 이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 가(自家)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 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투표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 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 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 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 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 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	전 가 보는 이 기 년들의 기계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 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 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 · 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 로 한다.

② ~ ④ (생 략)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⑩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⑩ (생 략)

(II)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 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55條(投票時間) ① ~ ⑤ (생 략)

<신 설>

----2배수로 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다만, 인구·행 정구역 · 지세 ·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①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 애인・임산부・「감염병의 예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 1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치 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제 42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 <u>또는 시설</u> 격리 중인 사람 등

第155條(投票時間)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열고 오후 9시에 닫는다.